

이 자료는 **9월 7일(금) 오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6일(목) 12시**]

배포일	2018년 9월 5일(수) (총 6쪽)	담당부서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담당자	신국범 팀장 (043-880-5631) 곽주현 조사관 (043-880-5648)

일부 어린이 샌들에서 유해물질 검출

- 20개 중 4개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

활동성과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종류의 어린이 샌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인조가죽 재질 13개, 플라스틱 재질 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 어린이 샌들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고, 샌들은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특성이 있어 보다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됐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기준 '어린이용 가죽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을 유발함
- 납: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3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깔창과 발등 밴드에서 안전기준(0.1%이하)을 최대 342배(최소 0.2% ~ 최대34.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개 제품의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1.15배 초과(347mg/kg)하는 납이 검출됐다.

[어린이 샌들 재질별 유해물질 검출량(범위) 및 제품 수]

재질	유해물질	준용 기준	기준치	검출량(범위)	기준초과 제품 수(개)
인조가죽	납(mg/kg)	어린이용 가죽제품	300 이하	347	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0.2~11.6	2
플라스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아동용 섬유제품	0.1 이하	34.2	1

□ 대부분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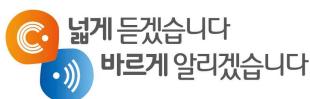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제조사명·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20%)에 불과했다.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도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 제품은 해당 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적합 어린이 샌들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샌들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1 일반 현황

- (현황) 어린이샌들은 다양한 소재의 종류가 판매되고 있으며 주요 소재에는 인조 가죽, 섬유, 플라스틱(PVC, EVA¹⁾) 등이 있음.
- 어린이샌들 관련 규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인조가죽 샌들은 부속서 1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따르며, 플라스틱 샌들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을 따름.

[어린이샌들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명		허용치	
		인조가죽	플라스틱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0.1 이하	좌동
유해원소 함유량 (mg/kg)	총 납(Pb)	300 이하	90 이하
	총 카드뮴(Cd)	75 이하	좌동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DEHP(Diethylhexyl phthalate,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0.1 이하	좌동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 유해물질 유해성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피부 접촉 시 자극·가려움증·홍반 등을, 호흡기 노출 시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납)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하고 있음.
 - *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로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며, 사람에 대한 근거 역시 제한적임.
 - (카드뮴)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IARC에서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하고 있음.
 - * 인체 발암성 물질로 인체에 대한 충분한 발암성 근거가 있음.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 DHEP (Di-(2-ethylhexyl) phthalate)는 IARC에서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하고 있음.

1)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의 줄임말로 부드럽고 유연성이 뛰어나며 충격 흡수가 뛰어나 신발의 바닥창에 주로 사용됨.

2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인조가죽 샌들 13종, 플라스틱 샌들 7종(EVA 재질 6개, PVC 재질 1개)
- (선정기준) 오프라인 판매 제품 및 인터넷 판매 인기 순위
- (시험검사 항목 및 방법)

구분	적용기준	내용
인조가죽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_어린이용 가죽제품)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가소제
플라스틱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5_아동용 섬유제품)	

▪ (표시실태 조사 항목)

구분	적용기준	내용
인조가죽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재료의 종류(갑피, 창), 치수(권장),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플라스틱		사용연령,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겉감, 안감), 치수(권장),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가. 시험검사

- 20개 중 4개 제품에서 납(Pb)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됨.
 - (납) 20개 중 1개(인조가죽) 제품에서 납이 안전기준(300mg/kg)을 1.15배 초과(347mg/kg)해 검출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0개 중 3개(인조가죽 2개, 플라스틱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342배(최소 0.2%~최대 34.2%) 초과 검출됨.
 - (기타) 20개 중 2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안전기준(75mg/kg) 이하로 검출됐고, 다이메틸푸마레이트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됨.

[유해물질 검출 현황]

구분	유해물질	기준치	검출 제품 수(개)	검출범위	기준초과 제품 수(개)
인조 가죽	납(mg/kg)	300 이하	4	23~347	1
	카드뮴(mg/kg)	75 이하	2	42~62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3	0.09~11.6	2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0.1 이하	-	-	-
플라 스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2	0.01~34.2	1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 및 검출 부위]

시료 번호	제품사진	제조업체 및 수입사(모델명)	검출 부위	검출치
인조 가죽		(주)제이스맘 (052-JK26)	갈창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11.6%
		태극아동화 (징 샌들)	큐빅 장식	납 : 347mg/kg
		꽃신방 (슈플레이스 큐빅 옆리본 유아동 샌들)	갈창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0.2%
플라스틱		(주)엘유티 (월드컵 블로퍼 키즈)	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34.2%
			갈창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30.9%

나. 표시실태 조사

- 조사대상 20개 중 16개(80.0%) 제품은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자명, 제조연월, 제조국명, 치수, 취급 시 주의 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표시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
- 특히 6개 제품(30%)은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품 선택 및 사후 구제에 필수적인 표시를 전부 누락하고 있었음.

[표시 현황]

구분	사용연령 ^{주1)}	치수(권장)	제조연월	재료의 종류 ^{주2)}
적합	1개(14.3%)	11개(55.0%)	9개(45.0%)	8개(40.0%)
부적합	6개(85.7%)	9개(45.0%)	11개(55.0%)	12개(60.0%)
계	7개(100%)	20개(100%)	20개(100.0%)	20개(100.0%)

구분	제조사명	취급상 주의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적합	11개(55.0%)	11개(55.0%)	12개(60.0%)	12개(60.0%)
부적합	9개(45.0%)	9개(45.0%)	8개(40.0%)	8개(40.0%)
계	20개(100.0%)	20개(100.0%)	20개(100.0%)	20개(100.0%)

주1) 플라스틱 제품에 한함.

주2)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기정용 섬유제품) 기준(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충족 시 표시적합으로 간주

[어린이산물 표시 현황]

표시기준 적합사례	표시기준 부적합사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도안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의 표면이나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0%) 제품이 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음.

[공급자적합성확인 도안(KC) 표시 현황]

구분	표시	미표시	계
제품 수	14개(70.0%)	6개(30.0%)	20개(100.0%)